의안번호	제	호
의결연월일	2019. (제	· · · 회)

의	
결	
사	
항	

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19. 10. 7.

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호

제출연월일: 2019. 10. 7. 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일부 개정(법률 제1627호, 2019.1.8.공포, 2019.7.9.시행)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)
- 나. 상위법에서 위임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22조)
- 다. 상위법에서 위임한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29조)
- 라.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 갱신 횟수, 갱신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0조의2)
 -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으며,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- 마.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에 대한 철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36조)
- 바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
 - 1) 기획감사담당관(법무개혁담당): 규제심사
 - 2) 복지지원과(여성가족담당): 성별영향분석 평가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19-1039호
 - 가) 예고기간: 2019. 8. 7. ~ 8. 27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 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"가목 내지 마목"을 "가목부터 마목까지"로 한다.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군수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, 취소한 내용을 고성군 공보 등에 공고 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 중 "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2조제4호"를 "법 제2조제4호"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제19조의 규정"을 "제19조"로, "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"을 "규칙 제12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(상인회의 등록 취소)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

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③ 군수는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, 취소한 내용을 고성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.

제23조제2항 중 "「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"를 "「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"규칙 제14조의 규정"을 "규칙 제14조"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의하여"를 "따라"로,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한다.

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9조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.
 - ③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, 취소한 내용을 고성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9조의2제1항제2호 중 ",「소방법」"을 ", 「소방기본법」"으로 한다.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예산을지원받아"를 "예산을 지원받아"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의하여"를 "따라"로, "의한"을 "따른"으로, "이조"를 "이 조"로 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① 법 제17 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.

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, 법 제17조의2제 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.

제31조제1항 중 ",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"를 ",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"로 하고, 같은 조제4항 중 "80퍼센트로"를 "100분의 80으로"로 한다.

제33조 중 "법규가 정하는 바"를 "법규"로 한다.

제35조 다음에 "제8장 시장정비사업 추진"을 삽입한다.

제8장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(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) 시장정비 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(이하 "토지등 소유 자"라 한다)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 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생년월일, 주소,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시장구역의 설정기준) ①	제7조(시장구역의 설정기준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제6조제1항제1호에 <u>의한</u> 토	② <u></u> 따른
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	
되어야 하며, 1필지의 토지 일	
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	
여야 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	제8조(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
설과 부지) ① (생 략)	설과 부지) ① (현행과 같음)
1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	1
3호 <u>가목 내지 마목</u> 및 제4호	<u>가목부터 마목까지</u>
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	
하는 용도의 시설	
2.・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시장의 인정취소) ① 군수	제10조(시장의 인정취소) ① 군수
는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	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
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	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"법"이
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	라 한다)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
	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
	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

제11조(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) 지상권활성화구역은 <u>「전통시장</u>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 조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
제21조(상인회의 등록 등) ① 제1 지 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인 회가 정부와 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을 받기 위해 서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 <신 설>

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
야 하며, 취소한 내용을 고성군
공보 등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
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11조(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) -
<u>법 제2조제4호</u>
제21조(상인회의 등록 등) ① 제1
9조
<u> </u>
규칙 제12조제3항
<u>11 4 711777198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상인회의 등록 취소) ①
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
<u>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</u>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
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
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절
차를 거쳐야 한다.
③ 군수는 상인회 등록을 취소

제23조(예산의 지원) ① (생 략) 지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법 제65조제7항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고성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절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27조(시장관리자의 지정) ① 군 지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,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28조(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) 저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 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

	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
	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
	야 하며, 취소한 내용을 고성군
	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
	신문 등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
	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세	23조(예산의 지원) ① (현행과
	같음)
	②
	「고성
	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	<u>.</u>
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세	27조(시장관리자의 지정) ①
•	
	규칙 제14조
	② (현행과 같음)
세	28조(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)
- 1	(1)

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 장관리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.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 탁한 경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워할 수 있다. <신 설>

<u> 따른</u>
② 따라
범위

제29조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

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

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 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절 차를 거쳐야 한다.

③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, 취소한 내용을 고 성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 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,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 다.

- ① (현행과 같음)
- 1. (현행과 같음)

제29조의2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 제29조의2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 ① (생 략)

1. (생략)

- 2. 비 가리개 : 불연재 혹은 난 2. 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, 「건 --- 축법」, 「소방법」, 「도로 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 --- 여야 한다. ---
- 3. ~ 5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30조(시설물의 소유권) ① 법 저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지원받아 시장・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 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2. (생략)
 -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<u>의하여</u> 취 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<u>의</u> 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시장관리자(이하 <u>이조</u> 에서 "상인조직"이라 한다)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
 - 1. · 2. (생략)
 - ③ ④ (생 략)

<신 설>

۵.
, 「소방기본법」
, <u>'고행기는입</u>
<u>.</u>
· 3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30조(시설물의 소유권) ①
<u>예산을 지원받아</u> -
,
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따라 따라
른
느 이 조-
1.・2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30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・수
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
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

제31조(위탁관리) ① 군수는 시장
·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
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제3항 및 「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」, 「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」, 「고성군공하장 조례」, 「고성군공 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」,
「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따라영제3조에따른 상인조직또는법제67조제2항에따른시장관리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.
②・③(생략)

④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

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

율은 80퍼센트로 한다.

<u>사용·수익허가 또는</u>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제한 하지 아니한다.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,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 에 한정한다. 제31조(위탁관리) ① -----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| -----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--- 100분의 80으로 ---.

제33조(사용료 및 경비징수 등) 저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<u>법규가 정하는 바</u>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<u><신</u>설>

<u><신 설></u>

제33조(사용료	및	경비]징수	등)	_
			<u>법규</u>	· -	

제8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제36조(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 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)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 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(이 하 "토지등 소유자"라 한다)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에 대한 동 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 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. 생년월 일, 주소,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붙임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○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제2호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부합되는 내용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주된 개정 내용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.

작성자: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- 제10조의2(시장의 인정 취소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
 - 2.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 - 3.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
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8.]

- 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 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・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・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・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 항에 따른 사용・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갱신기간

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 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.
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11.]

- 제38조의2(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)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 -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 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8.]

제65조(상인회)

⑧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8.>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
- 2.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
- 3.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
- 4.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, 건축물·토지소유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- ⑨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8.>
- ①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9. 1. 8.>
- ①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, 2019. 1. 8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- 제68조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 - 2. 상인 및 건축물·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 하는 경우
 - 3.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
 - 4.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8.]